

연금저축신탁 핵심설명서

이 핵심설명서는 '13.3.1일 이후 연금저축신탁 가입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연금저축신탁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연금저축신탁 제도개요

구분	내용
상품명	• 연금저축신탁
상품개요	•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불특정 금전신탁
가입대상	• 국내거주자 (연령 제한 없음)
납입한도	• 1만원 이상,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백만원 이내(자유적립식)
적립기간	• 연금수령개시 전까지(가입일로부터 5년이상,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)
연금지급기간	•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55세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10년 이상
연금지급조건	•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를 신청
세액공제	• 당해연도 납입액(공제한도 400만원)의 13.2%(지방소득세포함)를 세액공제 단, 1.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 5백만원이하)인 거주자는 16.5%세액공제 2.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임.
신탁보수	• 연(0.6)% (신탁재산 순자산 평잔기준)(2016.12월 현재)
관계법령	•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

2 연금저축신탁 세제제도

저축액 납입시	인출시		
	적립기간 중	연금지급기간 중	
		연금수령한도 ^{**} 内	연금수령한도 外
세액공제 혜택	기타소득세 (16.5%, 지방소득세포함)	연금소득세 ^{**} (3.3%~5.5%, 지방소득세포함)	기타소득세 ^{**} (16.5%, 지방소득세포함)

주 1) 연금수령한도 = $\frac{\text{신탁계좌의 평가액}}{\text{(11-연금수령연차)}} \times 120/100$

연금수령한도산출일 : 연금지급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,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 1일

연금수령한도 범위 이내 인출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,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

* 연금수령연차 :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하고 만55세를 충족한 연도를 1년차로하여 매년 누적 합산

주 2) 연금소득세 = $\{ \text{실제 세액공제 받은 연금(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내)} + \text{신탁이익} \} \times \text{세율(연령별 차등적용 세율)}$

*연령별 차등적용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

연령	세율
~ 70세미만	5.5%
70세이상 ~ 80세미만	4.4%
80세 이상	3.3%

주 3) 기타소득세 = $\{ \text{실제 세액공제 받은 연금(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내)} + \text{신탁이익} \} \times \text{세율}(16.5\%)$

* <인출방법별 적용세율 요약>

구분	인출방법	적용세율
연금수령한도 内	연금지급, 중도(일부)해지	연금소득세
연금수령한도 外	중도(일부)해지	기타소득세

* 연간 연금소득금액(사적연금에 한함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*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3 상품 특징

구 분	내 용
상품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금저축신탁 채권형, 안정형(주식운용 10% 이내)
이익계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상품
원본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탁계약의 해지,계좌이체 또는 종료시 순적립누계액(총납입액에서 인출한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)을 보전 (단, 해지시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의 발생으로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 제외)
신탁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탁기간 = 적립기간 + 연금지급기간 - 적립기간 : 연금수령개시 전까지 (단,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이고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) - 연금지급기간 :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※ 연금수령주기 : 1개월, 3개월, 6개월, 12개월로 선택 가능
중도해지 및 일부인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탁기간 중 (적립기간 중, 연금지급기간 중) 일부인출가능 -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(채권형) 또는 제4영업일(안정형)에 지급
계좌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체 가능 - 계좌이체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이체신청의 취소는 당일만 가능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- 2013.3.1. 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신청하는 경우 -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(DC, IRP등) 상호간 이체불가 단,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간의 이체는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되고, 만55세이후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전액이체를 하는 경우 가능 (이연퇴직소득이 개인형IRP에 있는 경우 5년 미경과시에도 허용) -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거절된 경우 -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
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및 일부인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시 연금소득세(분리과세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★부득이한 사유★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하며, 소득요건과는 무관)의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(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소득세를 적용- 공제대상의료비, 간병인비용, 요양기간,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) ④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은행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만, 부득이한 사유에의한 해지 및 일부인출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</div>
양도 및 담보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도는 불가능하며 본인명의 대졸에 한하여 담보제공 가능
적립금의 적립 시기 제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 신청하는 연도에 납입한 것으로 할 수 있음 (전환금액은 당해연도 기존납입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)
예금자보호	<p>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 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p>

- 연금저축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.
- 연금수령 신청시에는 「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」와 세무서 또는 국세청(홈텍스)에서 발급한 「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」 및 다른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다른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「연금납입확인서」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- 연금저축신탁은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적립기간 중에는 해당 과세기간 순납입액(납입액-인출액)에 대하여,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해에는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순납입액(납입액-인출액)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하며,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.
-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외 수령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중도해지 또는 일부인출)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납부로 해지원리금이 신탁 원본에 미달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간 연금소득금액(사적연금에 한함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KEB하나은행(www.kebhana.com) 및 은행연합회(www.kfb.or.kr)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신탁 수익률, 수수료율, 유지율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핵심설명서에서 안내한 세율 또는 상품내용은 관계법령이나 약관 등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.
- 본 내용은 정보의 주요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는 은행의 약관이나 개별 계약서를 참고하시고,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것을 권합니다.

※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하나은행 신탁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-1111 (서비스코드:예금상담 012) 로 연락 바랍니다.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 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홈페이지(www.kebhana.com)에 문의 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KEB 하나은행